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36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인권친화적인 학교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를 ‘교육활동’으로 확대
- 나.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주체별 책무 강조
- 다. 학교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라.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치료 등의 조치 실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6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0조, 제21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9조, 제20조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14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다. 협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2. 9. 8. ~ 9. 28.) 결과 요약서: 별첨 2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5

○ 관계법규 : 별첨 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직원
5. “교육활동”이란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①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학생·교직원·보호자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시 학생·

교직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절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장·원장,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 ① 학생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보호하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내 출입 관리 등 안전 대책)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방문 희망자의 학교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학교교육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당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2.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 지원
(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조례나 교육규칙 등으로 지원 가능한 경우는 예외)

③ 교육감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시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영혜(02-3999-491)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송 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3항 2, 3번 삭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요청 ○ 제6조 전체 삭제 교육감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지 학교장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교육의 공공목적에 대한 비전을 침해하므로 삭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미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임
(이창술 이정현 서울통합M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교육행정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교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학교의 정의에는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지 않지만, 교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포함됨 -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2항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순회상담교사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임 - 조례에 추가한 교원 지원 내용은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원이 법적 대응한 경우 소송비 지원 할 수 있다’이며, 근무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교육 활동을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순회상담교사는 포함이 됨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이 필요함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 추가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규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임 ○ 미반영 -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함. 따라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평가담당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
입안주관부서	감사관	통보일	2022. 9.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는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동 제정(안)은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1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담당자명	김영혜	전화번호	02-3999-4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9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중등교육과)	성별영향평가 관련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정원/02-3999-546)				
중등교육과장 귀하				

【별첨 5】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직급	장학사	성명	김영혜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고태훈, 고은채, 공율,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이민철, 이윤경, 이윤승				
검토의견						검토결과
<p>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하 ‘본 조례안’)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을 포함한 교육주체 각각에게 부여된 책무의 내용이 서로 형평에 맞지 않으며, 위반할 경우 출입 제재 및 사법적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한 책무의 내용이 모호·불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2) 책무만 규정할 뿐 교육주체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나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 조문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정책 결정시 학생, 보호자의 참여는 배제하고 있는 점, 3) 본 조례로 인해 명백히 권리가 제한되는 교육주체(학생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4)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상위법 및 서울시특별시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이미 보장 가능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 학생인권과 교권을 마치 대립/충돌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점 <p>등으로 인하여 학생 최우선의 원칙, 차별, 참여 등 모든 학생인권의 영역에서 학생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본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p> <p>아래에서는 각 조항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p>						<p>권고의견 있음</p>

1. 본 조례안 제1조는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에 대한 권리(수업권) 보장 등의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보호받을 학생의 권리,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자와 교원의 의무, 교원의 직무를 뒷받침하는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 등 교육주체 모두를 고려한 내용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상위법이라 볼 수 있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인권을 명시한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도 반하는 내용임.

2. 본 조례안 제2조 제5호는 “교육활동”을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¹⁾, 목적에서 밝힌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는 교원뿐 아니라 행정실, 급식실 등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교육활동의 보호를 받아야 함. 제3조 책무 조항에서는 교직원 모두에게 책무를 부여하면서, 제7조 교육활동 보장 조항에서는 교원만을 보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수업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교육활동”에서의 교육은 비단 식자능력과 수리능력으로 대표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결정을 할 능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능력, 건강한 생활방식,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와 책임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재능 및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그 밖의 능력과 같은 삶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²⁾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학습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임.³⁾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인권을 잃지 않으며,⁴⁾ 아동의 권리는 광범위한 윤리적 태두리 안에서 존재⁵⁾하기에 누군가의 권리 침해를 허용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은 아동이 자유로운 사회에 온전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였음.⁶⁾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실현되려면, 교육이 갖는 가치들 전달하고, 증진하며, 가르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 즉 교직원이 그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광범위한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편입될 수 없으며 이에 일치할 수도 없음.⁷⁾ 교직원의 의무는 학생의 권리 존중·보호·실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으며, 그러한 책무는 교직원의 인격적 존엄성과 기

본적 권리 보장을 뒷받침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에서 뒷받침될 수 있음. 즉,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무상 권한은 학생인권 보장에 호응하는 것이며, 이는 여타 교직원과 교육청,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잠재적 가해자를 학생, 보호자 등으로 간주하는 현행 조례안은 인권의 개념 및 법체계에 명백히 위배됨.

3.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학생의 참여와 의견청취에 대한 기회와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교육공동체의 능동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을 보호할 필요에서 고려할 때,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 마땅히 참여할 권리가 있음.

4. 조례안 제5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크게 우려됨.

(1) 형법상 금지된 행위를 조례에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규정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른 가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학생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

(2)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에게 부여된 책무가 형평에 맞지 않음. 교직원은 ‘교육활동 중’ 상호존중의 언행을 실천하여야 하나,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더 넓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임.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는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강제성 있는 문언을 사용함에 반해 교직원은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학생의 책무는 다른 주체들과 달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지 위주의 서술이 되어 있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전제된 인식(학생을 교권 침해의 가해자로,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동을 제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남.

(3) 학생은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주체’일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교육주체’이기도 함. 학생의 미래시민으로만 유예하는 표현도 학생인권에 반하는 점임.

(4)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모두 보장하도록 책무를 이미 두고 있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는 달리 명시하지 않아도, 권리의 주체에게 당연히 수반되는 개념임. 따라서 판단 기준과 위반의 범위가 모호하여 학생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이 없음.

(5) 참고로, 보호자의 책무 조항도 교원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 가능한 범위인지 의문인 점(학생에게 ‘교원을 존중할 것을 지도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정당한 교육활동’과 ‘부당한 간섭’이라는 불명확한 문구로 인한 명확성 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이 있음.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5. 본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전반적으로 판단기준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문언으로 되어 있고, 특히 제2호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학생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학교 내 출입을 제한, 금지하는 권리침해적 규정인 만큼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6. 조례안 제7조 제2항은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적절하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규정 위반에 해당되어야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만 규정하여도 충분한 것임.

한편 민원인의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원의 법적 대응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할 교육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인권에 기반한 교육활동 보호에 적합한 내용인지 의문임. 사인의 권리침해 사안에서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는 교육행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적 가치를 담은 사법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함. 더욱이 학교는 발달과정에 있는 학생이 인권 기준이 이행되는 현실을 보면서 인권을 학습하는 공간이어야 함. **인권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어야 하며, 일상과 아동의 경험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⁸⁾ 사법적 강경대응의 기초를 담은 본 조례안은 인권을 실천하는 교육의 기본적 가치를 외면하는 수단이며, 이는 학생의 권리침해 사안에는 교육감의 사법적 대응을 언급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과도 상응하여 뒷받침됨.

제7조 제4항은 ‘정당한 교육활동’, 심각한 지장 초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우려됨. 또 제7조의 전반적인 내용이 보호자 및 민원인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미루어, 제4

항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생의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치료 등 지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 학생을 치료의 대상으로 객체화 하는 것으로, 학생인권 침해적임. 학생, 보호자를 교육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전제하에 이들에 대하여도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명시되어야 할 것임.

7. 또한, 본 조례안의 자체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된 학생인권은 “없음”으로, 학생인권에 미칠 영향의 수준도 “없음”, 학생의 안전·성장·자유·건강·복지에 미칠 영향도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내용도 “없음”,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없음”, 학생인권에 대한 차별 우려도 “없음”으로 점검함. 학생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없었음을 알 수 있음. 본 조례안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은 교육주체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제1조 제3조),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인식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함.

8. 마지막으로 학생인권과 교원/교직원이 권리는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을 거듭 강조함. 권리의 충돌은 형식적인 표현일 뿐이며, 타인의 권리 보장에 마땅히 상응하는 의무 이행은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임. 즉, 사람은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이 됨으로써 자아 충족감을 얻으며,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기여하는 의무 이행으로 자유의 범위를 확장한다고 볼 수 있음.⁹⁾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양립하는 개념이며, 각 권리주체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 협력을 요청함. 교사는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무 이행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 및 지지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은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는 선순환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 아동기에 있는 학생이 더 쉽게 권리 침해에 노출될 수 있고, 권리 방어에 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전 과정에 권리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함. 이는 학생 1인과 교사 개인의 성품과 역량에 의존할 것이 아닌, 법과 제도, 시스템을 지지하는 구성원의 인식변화로 뒷받침되어야 함. 모두를 위한 인권적 기준과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에 대한 규제와 처벌 일관도의 대응은 결코 그 누구의 인권 존중에도 기여할 수 없음. 학생인권 보장 법체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 교직원의 긍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의 인권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교육공동체 일원이자 동료시민임.

<p>9.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전면검토를 요청하며, 부득이하게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에도 학생인권에 기반한 검토를 제안함.</p> <p>끝.</p>	
--	--

-
- 1)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교육부의 2022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되며, 이밖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①, ②와 관련된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인정한다고 제시하면서,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2) CRC/C/GC/1, para. 9.
 - 3) CRC/C/GC/1, para. 2.
 - 4) CRC/C/GC/1, para. 8.
 - 5) CRC/C/GC/1, para. 7.
 - 6) CRC/C/GC/1, para. 12.
 - 7) CRC/C/GC/1, para. 18.
 - 8) HRI/GEN/1/REv.6. para. 15.
 - 9) 샌드라 프레드먼(2009).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109-117쪽 참조.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소속	중등인사팀	직급	장학사
			성명	김영혜	전화번호	3999-491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여부		부서의견		비고
별첨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 및 법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① 제4조1항 수정 ② 제5조 수정 ③ 제6조 수정 ④ 제7조2항 수정 ⑤ 제7조4항 수정		

【별첨 6】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일부개정]